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8년 동거생활 청산에 따른 재산분배 문제는

〈문〉 저는 8년동안 한 남자와 법적으로 혼인은 하지 않았으나 부부처럼 생활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 동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두 사람이 버는 모든 수입이나 그로 인해 장만되는 모든 재산은 두 사람 공동재산이며 우리는 다른 어떤 부부라도 다를 바 없이 남편과 아내로 지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8년동안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버젓한 부부로 행세했으며 또 그렇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도 하나 마련하여 둘이 함께 운영해왔고 가게 운영에서 모은 돈으로 집도 장만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자의 이름으로만 매입이 되어왔고 저는 남자만 믿고, 별로 간섭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보고 자기 집에서 나가라 하고, 가게도 전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아내로서 재산분배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따른 법적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부부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아내로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다음의 4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두 사람 사이에 축적된 재산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동거 시작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래에 두 사람에게 의해 축적되는 모든 재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며 귀하는 계약법에 근거하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남자와 동업자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가게의 수입으로 장만된 집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하는 지난 8년간 귀하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남자가 맡아 관리해온 신탁재산이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지난 8년간 무임금으로 가게나 집을 위해 일해온 것에 합당한 보수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 가진 것 없는 짧은 결혼 생활, 서로가 이혼 원해

〈문〉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성격차이로 이혼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으며 서로에게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위한 간단한 절차는 없습니까.

〈답〉 귀하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약식이 혼청구(Joint Petition for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식이혼청구는 일반 이혼보다 서류양식이 훨씬 간단합니다. 하지만 약식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

야 합니다.

첫째,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며 둘째,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없고 셋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넷째,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부채의 액수가 5천달러 미만이며 다섯째, 부부 공동재산이나 개인 재산이 2만5천달러 미만이며 여섯째, 재산분배에 있어 논쟁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생활비 보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조건들에 별 하자가 없으시면 배우자와 함께 약식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Durable Power of Attorney」란

〈문〉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흔히 쓰여지는 「Durable Power of Attorney」란 대체 무엇입니까?

〈답〉 고령이나 혹은 지병, 불치병으로 인해 자신이 개인 생활에 관련된 제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사태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개인은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있는 동안, 자신이 신임하는 친지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경제적 재정적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할 위임권을 대리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권은 개인 자신이 기본적인 사무처리의 능력과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만 대리인에 의해 행사되어질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Durable Power of Attorney」란 개인 자신이 기본적인 사무 처리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의식 불명이 된 경우에도 개인의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 자신과 그의 대리인 사이에 작성되는 문

서입니다. 「Durable Power of Attorney」를 집행함으로써 대리인은 문서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의 동산, 부동산, 재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관리하며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병원에서 의식 불명이 된 경우, 개인의 치료에 따르는 여러 절차에 대하여 개인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 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주택용자

주택구입용자
주택 재용자
개조·증축 용자
2·3차 용자
10만불까지 2주안에 가능

진리
Pgr.213.499.3388

최저의 이자율 · 최고의 신뢰감

First Realty Mortgage
Office Tel. 213.427.7676